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7
----------	------

2017년 4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17년 4월 4일
- 다. 회 부 일 : 2017년 4월 6일
- 라. 상 정 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 조욱형 재무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8조)
-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2016.12.27.제정, 2017.3.28.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새로 전부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입법 배경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본조례 및 징수조례 제·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사항>

현 행 (기본 조례)	제 · 개정안	
	시세 기본 조례안	시세 징수 조례안
(§1) 목 적	1조	1조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2조	2조
(§3)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3조	
(§4)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4조 (이륜자동차 반영)	
(§5)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자동차세 특례		
(§6) 서류송달의 방법	5조	
(§7) 허가등의 제한		3조
(§8) 징수교부금		5조
(§9) 교부금전의 예탁	6조	
(§10)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6조
(§1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4조
(§12) 지방세심의위원회	7조	
(§13)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8조	7조

○ 본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2017. 1)하여 왔으며, 이 기본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지방세의 세목, 세율, 부과·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함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 주요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중 제7조(허가 등의 제한), 제8조(징수교부금), 제10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4개 조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4개 조항),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1개 조항),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3개 조항)하는 것으로 조문과 관련한 비교 및 개정사유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기본조례】 13개 조항⇒8개 조항

-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규정(4개 조항)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1개 조항)
 - (현행) 자동차 등록 ⇒ (개정) 자동차 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무관할 신고 도입('17.1.1시행)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3개 조항)

- 본 전부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낭비 방지,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 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득세 신고 서류: 10일 이내
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서류: 14일 이내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